



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

[시행 2025. 2. 10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2호, 2025. 2. 10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기업훈련지원과), 044-202-7266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·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수료)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·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1. 외부평가 응시수수료: 별표
2. 일학습병행 자격증(수첩형) 발급·재발급 수수료: 3,100원(배송비 별도)
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5-12호, 2025.2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